

2001년도  
학술연구교수(MOE-KRF Research  
Professor) 지원사업 신청안내

2001. 6.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력지원팀)

## I. 사업목적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대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력 증진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유도

## II. 기본방향

-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 순수인문학 및 순수기초과학을 선정시 우대
- 대학의 적극적 호응이 있는 경우 심사시 우대
  - 대학은 1년 단위 계약제로 부설연구소 전임 연구교수를 채용하고 이들에게 사무실 및 제반 편의제공을 원칙으로 함
  - 대학이 기존 학과(학부) 교수중에서 대학부설연구소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 심사시 우대
  - 3년의 계약기간 종료후 자체 재원으로 연구교수제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학은 심사시 우대
-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중점 지원
  - 연구계획서 중심에서 연구업적을 중시하는 심사체제를 확립함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의 극대화
  - 패널심사와 우송심사를 병행하여 다단계 심사를 실시함
- 연구지원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 매년 업적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소장 및 대학의 총(학)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구 중지제 도입

## III. 지원내용

1.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분야 포함)를 중심으로 하되 순수기초과학 분야 포함
2. 지원규모
  - 연구지원금 : 1인당 연간 3,000만원
  - \* 400만원은 연구비, 2,400만원은 연구활동비(매월 균등지급), 200만원은 연구기관지원금(간접비용등)으로 지원함

☞ 선정지원은 1개 대학부설연구소당 1인, 1개 대학당 3인까지로 함
3. 지원기간 : 3년까지 지원
  - 단, 연구개시 2년 이내에 출판된 논문(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우수국내학술지 1편 또는 창의적 저서 1권, 자연계열의 경우 SCI급 논문1편)의 심사를 거쳐 1년의 추가지원을 결정함.
4. 연수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기관

## IV. 공모 및 신청

### 1. 공모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을 통한 공모
- ※ 인터넷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게시판-공지사항 또는 Hotnews를 통한 신청요강 및 신청양식 제공

### 2. 신청

#### 가.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학술연구자등록을 상세히 작성한 후, On-Line 신청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음.

※ 학술연구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연구업적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학술연구자 등록)를 활용함. 연구신청자는 “학술연구자 등록”에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함.

##### ○ 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동 사업의 소정양식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On-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연구예정연구소장 추천서를 받아 연구희망기관 연구지원담당부서로 제출하면 소속 기관장이 수합하여 일괄 추천함. 만약 온라인 신청자가 연구희망기관장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됨.

#### 나.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01. 7. 2(월) ~ 2001. 7. 6(금) 18:00까지
-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001. 7. 12(목)까지

##### ※ 1.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2. 상기의 지원신청서 접수기간은 재단 도착일 기준으므로 재단과 연구희망기관별 기관별 접수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희망기관에 접수마감일을 확인할 것

#### 다. 신청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후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연구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소속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학 총(학)장이 1년단위 계약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 단, 현재 취업중인 자(국민연금가입자중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중 직장가입자)는 선정후 1개월이내에 퇴직하여야 함(별도 증빙 제출)
- ※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의무가입)를 말함.

- 인문·사회 계열 : '96.7.1~'01. 6.30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
- 자연계열 : '96.7.1~'01. 6.30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및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  
단,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등록 완료된 국제 특허 포함)이 반드시 2편이상 포함 되어야 하며,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 제출 요망 (재단홈페이지→게시판→제안코너이용)
- ☞ 예고 : 2002년 부터 인문·사회계열은 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계열은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이 3편 이상 포함되도록 상향 조정할 예정임

#### 라. 신청제한

- 신청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교 동일대학의 부설연구소를 연구교수 소속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대학의 기존 학과(학부)전임교수중에서 대학부설연구소로 연구교수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의 연구비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보조수당 등)를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연구자, 두뇌한국(BK21) 박사후 연수과정자  
단, 수혜를 포기할 경우는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에 따른 모든 절차는 신청마감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재단의 박사후연수과정(Post-Doc.) 수혜자는 신청가능하나 2000년도 수혜자의 경우 추후 본사업 선정시 박사후연수과정 지원비는 지급중단하고 연구결과는 동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함.

#### 마. 연구참여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하고 있

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1.12.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바. 신청서류

- 1) 지원신청서 (재단소정양식)
- 2) 박사학위 취득 학위기
- 3) 연구예정연구소장 추천서
- 4) 연구교수제 운영계획서 (재단소정양식)
- 5) 연구계획서 (재단소정양식)
- 6)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A4용지 3매 이내)
- 7) 대표논문 1편 (최근 5년간 대표적인 연구논문)

※ 상기 제출서류는 재단홈페이지 (<http://www.krf.or.kr>)에서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력지원팀 ☎02)3460-5695, 5694 FAX 02) 3460-5650

V. 심사절차 및 방법

1. 1단계 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여부 검토(2단계 심사 가부 결정)
2. 2단계 심사 : 연구업적에 대한 계량적 및 질적 평가(3단계 심사 가부 결정)

심 사 항 목	비 고
1. 대표논문의 수준 및 학문적 기여도	
2. 연구업적의 수준	

3. 3단계 심사 : 연구업적심사를 통과한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전공심사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비 고
연수의 필요성	연수과제의 독창성 및 중요성	
연수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간의 연계성 및 연구수행방법과 이론적 배경 등의 타당성	
학문발전 및 실용에의 기여도	과제 종료후 예상되는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대효과	

4. 4단계 심사 : 연구업적 심사와 연구계획서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과제 최종확정

## VI. 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발표

### 1. 중간보고서 제출

#### 가. 제출시기

- 1차 : 1년차 연구개시후 10개월이내 (재단 소정양식)
- 2차 : 2년차 연구개시후 10개월이내 (재단 소정양식)

\* 아울러 2차 중간보고서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당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여부 조사연구결과 A, B급 학술지 게재논문, 자연계열의 경우 SCI급 학술지 게재논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상기의 학술지 게재논문 미제출시 연구중단과 아울러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 나. 중간보고서 평가

당초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여부 확인 및 차기연구계획의 수행가능성 평가 (후속연구비의 지급타당성 평가)

### 2. 결과보고서

가.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이내

#### 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제출 완료시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교수해외과건 연구비 포함) 지원을 제한함

### 3. 최종연구결과물 발표

#### 가. 연구결과물 발표에 대한 책무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내외전문학술지에 **3페이지 이상(저서, 특허포함) 게재**하여야 함

<예 고>		
◇ 2002년부터 최종연구결과물은 아래와 같은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함		
사 업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 연구교수 지원사업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 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SSCI급) 학술지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 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SCI급) 학술지

#### 나. 연구결과 제출시기

국내·외 학술지 : 연구기간 종료후 2년이내

### 4. 연구결과 사후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성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연구책임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대학 등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 재단이 당초 연구비 지원시에 특정조건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 VII.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1. 지급방법

연구비는 해당대학으로 일괄 송금하여 대학이 해당연구자에게 월별 지급함.

- ### 2. 관리방법 : 연구지원금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비관리 주관부서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VIII. 연구지원 대상자의 지위 및 역할

### 1. 지위

- 본 지원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자를 학술연구교수(MOE-KRF Research Professor)라 한다
- 대학은 연구교수의 사무실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3년간 지원을 원칙(연단위로 계약)으로 대학부설연구소 전임 연구교수로 채용한다.
- 연구기관은 연구교수로 하여금 도서관, 전산실, 실험실 이용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2. 역할 및 활용

- 연구자는 순수한 연구를 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최소한의 시간강사 역할(1학기 1과목에 한함)은 가능함

2001년도

# 학술연구교수(MOE-KRF Research Professor)지원 신청양식

## ▶ 신청시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양식 1>
- 2) 박사학위 취득 학위기 (2001년도 8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 3) 연구예정연구소장 추천서 <양식 2>
- 4) 학술연구교수제 운영계획서 <양식 3>
- 5) 연구계획서 (A4용지 10~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양식 4>
- 6)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A4용지 3매 이내)
- 7) 대표논문 1편 (최근 5년간 대표적인 연구논문)

※ 상기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제본하여 원본 1부를 제출하고, 5)번항에서 7)번항까지는 합본하여 5부(사본으로 제출)를 제출

## ▶ 지원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신청서의 내용(학위논문 요약문 포함)은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작성시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용지를 이용할 것
- 본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특히 학술연구교수 운영계획서는 선정 심사시 활용할 예정이므로 작성 및 제본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추후라도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연구예정연구소장 추천서

신청자	국문)	주민등록번호	-
	영문)		
연구과제명			
연구소장	직위	성명	
추천의견 :			

상기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신청에 추천하며, 연구자가 연구를 종료할 때까지 소속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01. . .

연구소명 :

(직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학술연구교수제 운영계획서

귀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학술연구교수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운영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01. . . . .

대학명 :

기관장(직인)

### 1. 연구교수제 운영의 필요성

### 2. 운영계획 (2001년 ~ 2004년)

- 가. 연구 (연구계획서에 의한 일반연구를 말함)
- 나. 특정프로젝트 참여 (연구주제 제시 및 개요설명)
- 다. 기타 운영방안

※ 각 항목은 연도별 세부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학술연구교수 처우계획

- 가. 일반 전임교수와 동일한 조건으로서의 처우 계획
- 나. 동 학술연구교수의 임용 및 처우에 대한 규정정비 계획
- 다. 학술연구교수 복무규율

※ 여기의 “처우”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보수이외에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말합니다.

### 4. 2004년 이후 자체 재원에 의한 채용 및 운영계획

※ 대학에서 학술연구교수제 정착을 위한 장단기 계획(학술연구교수 운용을 통한 연구소 육성방안, 학술연구교수 임용을 위한 자체 재원 충당방안 등을 포함)을 기술하십시오.

※ 작성시 유의사항 : 학술연구교수제 운영계획서는 대학,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4>

※접수번호	On-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과제번호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연구 계획서

구분	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 아래의 각 항목별로 2~4매내외 분량으로 작성하되 3년간 계획의 기술이 필요한 항목은 년차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3.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참고문헌